Smiling Dalseo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어르신장애인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어르신장애인과장

대구달서시니어클럽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달서시니어클럽은 2004. 10. 21.부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1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5년간 지정 위탁 받은 기관으로 간주되어 2025. 12. 31. 지정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노인일자리법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고용 촉진 및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먼저, 시설 및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구달서시니어클럽은 달서구 성당로47안길 49(두류동)에 연면적 402.16㎡, 지하 1층에서 지상3층으로 2004년 10월 개소하였습니다.

○ 대구달서시니어클럽은 2004년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서 2004. 10. 21.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2025년 인력은 시설장 1명, 중간관리자 1명, 사회복지사 3명, 사무원 2명,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대구달서시니어클럽 주요 기능은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노인일자리 창업·육성,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2025년 기준 노인공익활동사업 13개 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 18개 사업단, 공동체 11개 사업단으로 총 41개 3,333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년 9. ~ 10월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접수하고, 2025년 11월 중 수탁기관을 심사 및 선정하여 2026. 1. 1. ~ 2030. 12. 31.까지 5년간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달서시니어클럽 사업비는 2025년 기준 총489,822천원 정도로 시비 433,054천원, 구비 56,768천원입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구달서시니어클럽이 노인고용 촉진 및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00925095

제출일자: 2025. 9. 3.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1. 제안이유

○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 수요 증가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달서시니어클럽을 전문성과 전담 인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대구달서시니어클럽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일자리법」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 市 어르신복지과-10673(2025. 7. 18.) 시니어클럽 위탁 수행기관 공모·선정 요청 공문 관련

○ 필요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및 취업 연계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내용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지침에 명시된 사업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라. 위탁시설현황

기관명	소재지	규모	위탁운영 개시일	비 고
달서 시니어클럽	성당로47안길 49 (두류동)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02.16㎡)	'26. 1. 1.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02.16㎡)

마.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지침에 기한의 정함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 (시니어클럽)은 '21년부터 운영 위탁 받은 기관으로 볼 수 있음

○ 기존 지정 ⇨ '21년 위탁 자동 변경 (5년 만료) ⇨ '26년 위탁 공모

※ 최초 지정 : 2004. 10. 2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적정 의견**

-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가능함
- 민간위탁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비용 대비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의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자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참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붙임2 참조

다.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3 참조

라. 향후 추진일정

○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5. 9. ~10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5. 10.~11월

○ 선정결과 공고 : 2025. 11월

○ 위탁계약 체결 등 : 2025. 11월

붙임 1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20. 12. 29., 2021. 12. 21.>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 ·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 · 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 · 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3. 위탁 재산의 관리 · 운영 능력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달서시니어클럽: 복지·문화·환경 분과

검토기준	검토의견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담기관을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사무 방식에 비하여 민간 위탁 사무로 추진되는 것이 적정함 ·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안정성을 위하여 사무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위 사업의 경우 그러하다고 사료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가능함 ·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음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비용 대비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인력운용의 문제, 재정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이 어려움. 하지만 위탁운영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의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자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지자체의 측정기준에 근거하여 위탁사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가능함. · 달서시니어클럽 사무 성과의 측정은 노인일자리 연계 실적 등 기존 사무와 연계 성과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 사무관리 및 운영은 법인을 통해 사무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구청 사무 위착에 따른 지도점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음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시니어클럽은 공공성과 시장성을 혼합하고 있으므로 고령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 활발한 자유경쟁을 통해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시장여건은 갈수록 넓어질 것으로 판단됨.

붙임 3 달서니어클럽 민간위탁 추진계획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추진 계획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달서시니어클럽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익•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니어클럽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Ⅱ 추진경과 및 추진방향

□ 추진경과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부 지정): '01년

❍ 지방이양 및 「시니어클럽」으로 명칭 변경 : '05년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전환 : '13년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기존 무기한 지정에 관한 경과규정 신설 : '21년

※ '21년부터 5년간 운영 위탁받은 기관으로 간주하여 '25. 12. 31. 지정 만료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심의로 질적 수준 제고 및 전문성 확보

Ⅲ 달서시니어클럽 위탁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성당로47안길 49(두류동)

❍ 규　　모: 부지 492.9㎡, 연면적 402.16㎡(구유대상 무상임대)

층별	연면적	시 설 구 성	비 고
3층	126.16㎡	사무실, 회의실, 서류보관실 등	
2층	125.96㎡	사무실, 관장실, 화장실	
1층	124.52㎡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지하	25.52.㎡	보일러실	

□ 위탁법인

위탁법인	최초지정	현 위탁기간
가정복지회	2004. 10. 21.	2021. 1. 1. ~ 2025. 12. 31. (5년)

□ 운영인력

인력현황	계	시설장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	사무원
현 행	7명	1	1	3	2 (+1)
2026년(예정)	8명	1	1	4 (+1)	2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34명 별도

□ 위탁예산(2025년): 489,822천원(시비 433,054천원, 구비 56,768천원)

(단위: 천원)

총계	인건비		운영비		기타(복지포인트, 상해보험 등)
	시비(95%)	구비(5%)	시비	구비	
489,822	413,584	21,768	17,000	35,000	2,470

※ 노인일자리 예산 별도: 16,416,648천원(참여자 인건비+부대경비)

□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총괄(41개 사업단, 3,333명)

(2025년 기준)

사업유형	배정인원	활동비(월)	활동시간	운영기간	사업내용
노인공익 활동사업	1,750명	290천원	30(월)	11개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어린이집 시설도우미 등 13개 사업단
노인역량 활용사업	1,157명	634천원	60(월)	10개월	스마트경로당활동지원사업단, 즐거운생활복지지원사업단 등 18개 사업단
공동체 사업단	290명	근로 및 도급 계약 등에 따른 보수지급	1일 8시간 이내	연중	하단 표 참조
취업 지원	136명	민간기업 에서 지급	수요처에 따라 상이	연중	취업상담, 연계

□ 공동체사업단 현황(11개 사업단)

(2025년 기준)

사업명	개소일	참여 인원	주소	사업내용
백세기획	2006.10.	10	두류공원로 50길 42	현수막, 판촉물, 배너 등 출력물 제작 및 판매
파랑새백세 GREEN	2017. 5. 24.	11	감삼1길 96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단체 소독(방역), 청소 및 파쇄
파랑새 백세상회	2017. 6. 26.	8	성당로 47안길 49	노인일자리사업 최초 유통판매업으로 사무용품, 청소용품, 판촉물 등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
백세봉제	2020. 2. 11.	22	감삼1길 96	재봉틀을 이용한 봉제 제품 제작 및 판매
CAFE SOOA 1호점	2020. 7. 9.	15	달구벌대로 1750 (대구기독병원 1층)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한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 추출, 다양한 음료를 판매
CAFE SOOA 2호점	2021. 7. 21.	15	성서공단로11길 62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 S6동 1층)	〃
CAFE SOOA 3호점	2023. 8. 11.	15	상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
CAFE SOOA 4호점	2024. 11. 28	12	두류남3길 50 (서일교회 1층)	〃
달서WITH-U 스팀세차	2023. 11. 30.	23	수밭동길 17 (월광수변공원 제3주차장)	스팀세차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직접 차량 내·외부 스팀세차를 진행
백세보물	2024. 6. 27.	70	달서구 관내 고물상	달서구 관내 고물상과 협업하여 재활용품 및 폐지 수집, 분류 후 판매
백세밥상	2025. 9. 10 (예정)	25	상화북로 185, 동창빌딩 101호	반찬 및 도시락 제조 및 판매

Ⅳ 위탁계획

□ 위탁개요

❍ **대상시설**: 달서시니어클럽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위탁범위**: 시니어클럽 운영 관리 전반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 · 관리 및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지침에 명시된 사업
-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추진절차

민간위탁추진 계획수립	區 의회 사전동의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	위 · 수탁 계약체결
2025. 8월	9.15.~19. (제 314회 임시회)	2025. 9.~10월	2025. 11월	2025. 11월

□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제외 대상으로 확인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Ⅴ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 **근　　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 **기　　간**: 2025. 8. 8.(금) ~ 8. 18.(월)

❍ **방　　법**: 정책자문위원회 복지 문화 환경 분과 위원 서면자문 검토

❍ **검토결과**:【붙임 1】

□ 區 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 **근　　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기　　간**: 2025. 9. 15. ~ 19. (제314회 임시회 예정)

❍ **내　　용**: 민간위탁 추진 區 의회 사전 동의 必

□ 모집공고 및 접수

❍ **모집방법**: 구 홈페이지 공개모집　※ 공고문(안)【붙임 2】

❍ **공고기간**: 2025. 9. 22. ~ 10. 10.(19일간)

❍ **접수기간**: 2025. 10. 10. ~ 2025. 10. 15.(4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모집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만 신청하였을 경우 **재공고: 7일간**

❍ **접 수 처**: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1층, 노인정책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우편·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별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 **근　　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 **구　　성**: 6 ~ 9인 이내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심사 후 자동해산

위원회 개최

❍ **일　　시**: 2025. 11월 중

❍ **장　　소**: 미정

❍ **참석대상**: 심사위원

❍ **내　　용**: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심사 및 선정

❍ **근　　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 (2차) 대면심사(정성평가):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 등 설명, 질의응답 등

❍ **심사기준**: 사업 운영능력,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재정 능력 등【붙임 3】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개별심사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 합산 평균이 높은 기관
- 단독 신청의 경우, 심사배점표에 따른 심사에 따라 선정

❍ **결정통지**: 심사결과 구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자 개별 통지

□ **위 · 수탁 계약체결** ▸ 별도계획 수립

❍ **근　　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일　　시**: 2025. 11월 중

❍ **주요내용**: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 시 책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Ⅵ 행정사항

☐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025. 8월 중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5. 9. 1.(월) 限

☐ 위탁운영 법인(단체) 공모 및 신청서 접수: 2025. 9. ~ 10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2025. 10. ~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5. 11월 중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2. 수탁기관 모집 공고(안)

3. 선정 심사지표(안)

4. 관계 법령